# 트리븐 창원 입주자모집공고

청약통정 자격요건

비고

Horie



애플앱스토어

※ 입주 자격 및 청약관련 자세한 사항은 "트리븐 창원" 홈페이지(http://www.trivn-doosan-changwon.com)의 입주자 공고문 전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

※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(2025.07.25. 포함) 종전통장(청약예금, 청약부금, 청약저축)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,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.06.30. 시행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이 적용됩니다.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「주택법」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.

#### ※ 단지 주요정보 (분양문의) 055-286-0880 주택유형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해당지역

#### 경상남도 창원시 거주자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 거주자 비규제지역 전매제힌 거주의무기간 분양가 상한제 재당첨제한 택지유형 민간택지 없음 없음 미적용

### 공급위치 및 공급규모

-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0조의 규정에 의거 창원시청 주택정책과 23999호(2025,07,24,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- 공급위치: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723번지 일대
- 공급규모: 아파트 지하 3층, 지상 20~27층 6개동 총 434세대

[특별공급 199세대(기관추천 35세대, 다자녀가구 42세대, 신혼부부 79세대, 노부모부양 12세대, 생애최초 31세대) 포함] 및 부대복리시설

■ 입주시기: 2028년 08월 예정 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)

#### 2 <del>공급</del>대상 (단위: m², 세대) 주택공급면적(m²) 기타 공용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 최하층 주택 약식 계약 세대별 총공급 우선배정 모델 (전용면적 면적(지하 기관 다자녀 신혼 노부모 생애 공급 주거 주거 관리번호 표기 면적 대지지분 세대수 소계 계 주차장등) 기준) 세대수 세대수 추천 가구 부부 부양 최초 전용면적 공용면적 01 084,9719A 84A 84.9719 27.5149 112.4868 | 51.4703 163,9571 44.3593 19 21 48 6 19 | 113 | 100 9 02 084,9782B 84B 84,9782 27,6832 112,6614 51,5501 164,2115 44,3626 136 16 13 31 12 76 60 6 64,9405 0 0 5 39 2 03 107.2774A 107A 107,2774 34,6478 56,0039 44 0 141 9252 206 8657 107B | 107,2774 | 34,6478 | 141,9252 | 64,9405 0 0 5 04 | 107,2774B 206,8657 | 56,0039 41 4 1 0 36 2 35 42 79 12 31 235 19 434 199

####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

-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,07,25,(금)입니다. (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, 나이,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)
-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에 거주(주민등록표등본 기준)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[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(재외국민, 외국국적 동포) 및 외국인 포함]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.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창원시 거주자가 우선합니다.

#### ■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

구분	특별공급	일반공급 1순위	일반공급 2순위	당첨자발표	서류접수	계약체결
일정	2025,08.04.(월)	2025.08.05.(草) 2025.08.06.(수)		2025.08.12.(화)	2025.08.13.(수) ~ 2025.08.22.(금)	2025.08.25.(월) ~ 2025.08.27.(수)
방법	• (PC·모바일) 청약홈(09:00 ~ 17:30) • (현장접수) 사업주체 견본주택	<ul><li>(PC·모바일) 청약</li><li>(현장접수) 청약통</li></ul>	홈(09:00 ~ 17:30) 장 가입은행	• (PC·모바일) 청약홈	• 트리븐 창원 견본주택 (주소 : 경상남도 창원시	성산구 중앙동 100-5번지)

- ※ 고령자,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(10:00~14:00, 은행창구 접수 불가),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·지점(09:00~16:00)에서 청약 가능합니다.(단,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)
- ※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:30까지 가능하며, 청약신청일 당일 17: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
- ※ 모바일: 구글플레이스토어, 애플앱스토어에서 "청약홈" 검색
- 모바일 청약 시,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,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#### **특별공급 신청자격** (신청 자격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필히 입주자모집공고 전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)

[2025,03,31,	,31.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의3(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) 개정 사항]					
조항	특별공급 신청유형	내용	유의사항			
제1항 (배우자의	신 <del>혼부부</del> 생애최초	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	저요하소 계층 어요			
혼인 전 이력 배제)	생애최초	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(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)	- 적용횟수 제한 없음			
제2항 (혼인특례)	신혼부부	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(재당첨 제한, 특별공급 횟수 제한)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	-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기능			
제3항 (출산특례)	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	'24.6.19, 이후 출생한 자녀(태아 또는 '24.6.19.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)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  → 이 경우,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*으로 청약신청 가능  * 기존주택 처분 조건 :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  - 1.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- 2.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 ('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3조제4항 각 호)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- 3.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 → 이 경우, 신혼부부 특별공급(공공주택 제외) 추첨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	-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-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 -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 -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			

- ※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,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 · 취소할 수 없습니다. -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,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,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,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합니다.

※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습니다.

※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, 입주가

구분		내용
	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 ※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	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. 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) 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한 규칙」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,
	구분	처리방법

	9 <u>40</u> 4	급의 돈이 지나답니다.	
		구분	처리방법
공급기준	당침	성자발표일이 다른 주택	당첨지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
る日/社	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	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	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,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※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, 연령(연월일 계산)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
	'' '' '' '' ''	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	모두 부적격 처리
	•		
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,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·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(1회 특별공급 간주),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
-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. ■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,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합니다.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(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입주자모집공고
- 전문 1. 공통 유의사항" p.2 참조) - 기관추천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/ 생애최초 특별공급 :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
- 노부모부양 특별공급: 무주택세대주 요건
-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- 기관추천(장애인,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(도시재생 부지제공자)는 청약통장 불필요) / 다자녀가구 / 신혼부부 특별공급 ① 청약예금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- ② 청약부금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 ·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- 노부모부양 / 생애최초 특별공급

청약통징

자격요건

- ① 청약예금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
- ② 청약부금 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
-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 ·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

### [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]

	구 분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(울산광역시)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* (경상남도 및 창원시)				
	전용면적 85㎡ 이하 300만원		250만원	200만원				
	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				
	모든면적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				
	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							

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

### 일반공급 (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28조)

구분	내용
- ' -	17
대상자	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창원시에 거주하거나 경상남도 및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(자녀양육, 형제자매부양) ■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

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① 청약예금: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

② 청약부금: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(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형에 한함)

③ 주택청약종합저축: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, 지역별·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- 2순위: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·청약부금·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

#### [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]

상 1건	구 분	특별시 및 부산광역시	그 밖의 광역시(울산광역시)	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* (경상남도 및 창원시)						
	전용면적 85㎡ 이하	300만원	250만원	200만원						
	전용면적 135㎡ 이하	1,000만원	700만원	400만원						
	모든면적	1,500만원	1,000만원	500만원						

※ '지역'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※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

■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

–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,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.

-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,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지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

### 6 공<del>급금</del>액 및 납부일정

			-11-1		공급	금액		계약금	<del>3</del> (5%)			중도금	1(60%)			잔금(35%
약식	동별	층별	해당 세대					1차	2차	1차(10%)	2차(10%)	3차(10%)	4차(10%)	5차(10%)	6차(10%)	이즈
표기	(라인별)	02	수	대지비	건축비	부가세	합계	계약시	계약 후 10일이내	2025. 11.15	2026. 05.13	2026. 11.13	2027. 05.13	2027. 10.13	2028. 03.13	입주 지정일
	102동 3호	1층	3	165,906,880	306,493,120	-	472,400,000	10,000,000	13,620,000	47,240,000	47,240,000	47,240,000	47,240,000	47,240,000	47,240,000	165,340,0
	103동 3호	2층	9	169,067,680	312,332,320	-	481,400,000	10,000,000	14,070,000	48,140,000	48,140,000	48,140,000	48,140,000	48,140,000	48,140,000	168,490,0
84A	104동 1,3호	3~5층	27		318,820,320		491,400,000	10,000,000	14,570,000	49,140,000	49,140,000	49,140,000	49,140,000	49,140,000	49,140,000	171,990,0
	105동 1,3호	6~10층	45		325,308,320		501,400,000	10,000,000	15,070,000	50,140,000	50,140,000	50,140,000	50,140,000	50,140,000	50,140,000	175,490,0
	106동 1,3,4호	11~27층	129		328,552,320	-	506,400,000	10,000,000	15,320,000	50,640,000	50,640,000	50,640,000	50,640,000	50,640,000	50,640,000	177,240,0
	101동 2호	1층	3	165,906,880	306,493,120	-	472,400,000	10,000,000	13,620,000	47,240,000	47,240,000	47,240,000	47,240,000	47,240,000	47,240,000	165,340,0
	102동 2호 103동 2호	2층	6		312,332,320	-	481,400,000	10,000,000	14,070,000	48,140,000	48,140,000	48,140,000	48,140,000	48,140,000	48,140,000	168,490,0
84B	104동 2호	3~5층	18		318,820,320	-	491,400,000	10,000,000						49,140,000	-	171,990,0
	105동 2호	6~10층	30	176,091,680	325,308,320	-	501,400,000	10,000,000	15,070,000	50,140,000	50,140,000	50,140,000	50,140,000	50,140,000	50,140,000	175,490,0
	106동 2호	11~27층	79	177,847,680	328,552,320		506,400,000	10,000,000	15,320,000	50,640,000	50,640,000	50,640,000	50,640,000	50,640,000	50,640,000	177,240,0
		2층	2	225,419,953	416,436,406	41,643,641	683,500,000	10,000,000	24,175,000	68,350,000	68,350,000	68,350,000	68,350,000	68,350,000	68,350,000	239,225,0
107A	101동 1호	3~5층	6	230,103,148	425,088,047	42,508,805	697,700,000							69,770,000		
1017	102동 1호	6~10층	10			43,373,969	711,900,000							71,190,000		
		11~23층	26	237,127,939		43,806,551	719,000,000				71,900,000			71,900,000		
		2층	2	' '	, ,	40,473,841	664,300,000							66,430,000		
107B	101동 3호	3~5층	6	' '			678,100,000							67,810,000		
. 5, 5	103동 1호	6~10층	10	' '	421,554,278		691,900,000							69,190,000		
		11~23층	23	230,465,930	425,758,245	42,575,825	698,800,000	10,000,000	24,940,000	69,880,000	69,880,000	69,880,000	69,880,000	69,880,000	69,880,000	244,580,00

※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,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이며, 전용면적 85m²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.

※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, 취득세,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괴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.

#### ■ 분양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

구분	금융기관	납부계좌	예금주
분양대금 (계약금, 중도금, 잔금)	국민은행	581201-01-430773	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

※ 계약금 무통장 입금 시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(예시: 101동 501호 당첨자의 경우 입금자명을 '1010501홍길동'으로 기재) ※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(유상옵션) 납부계좌와 상이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
### 발코니 확장 금액 및 납부일정

### ■ 발코니 확장(추가선택품목) 공급금액

(단위:원,부가가치세 포함)

약식표기	공급금액	계약금 (10%)	중도금 (10%)	잔금 (80%)	비고		
ゴゴエバ		계약 시	27.02.26	입주지정일			
84A	19,500,000	1,950,000	1,950,000	15,600,000			
84B	19,500,000	1,950,000	1,950,000	15,600,000	신청혈병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		
107A	30,600,000	3,060,000	3,060,000	24,480,000	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등에서 확인		
107B	28,200,000	2,820,000	2,820,000	22,560,000			

### ■ 반크다 항자 고시비 난보게자

■ 글고니 픽링 증시미 답구계되			
구분	금융기관	납부계좌	예금주
발코니 확장 공사비	국민은행	581201-01-430786	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

※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·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 단.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,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.(무통장 입금 예시 - 101동 1902호 계약자 → '1011902홍길동' / 103동 803호 계약자 → '1030803홍길동')

※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,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

# │ 8 │ 기타사항

- 입주예정일: 2028년 08월 예정 (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통보 예정)
- 부대복리시설: 부대복리시설: 주민공동시설 [피트니스(1개소), 실내골프연습장(1개소), 사워실(남여 각1개소), 클라이밍존(1개소), 멀티룸(1개소), 독서실(1개소)] 관리사무소, 경비실, 용역원휴게실, 맘스스테이션, 경로당, 어린이집, 지하주차장, 기계실, 전기실 등으로 구성

### 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내용

비 자태이 내가 자래도 내려자고 나이 비아버지의 도착 이교도에 나다

- 본 수택은 HUG 수택도시보증용사의 문양보증을 극인 아파트합니다.					
보증서 번호	보증금액	보증기간			
제 01282025-101-0004400 호	152,658,610,000원	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(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자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) 까지			

※ 사업주체의 부도,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

※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: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(HUG-i)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※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.

※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(☎1566-9009) ■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

구분	건축 / 토목 / 기계	소방	전기
회사명	㈜건축사사무소광장	㈜삼성유비스 주식회사	㈜한성기술단
감리금액	2,388,100,000원	114,326,479원	602,975,100원

### ■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

구분	시행위탁자	시행수탁자	시공자
상호명	㈜진화개발	한국투자부동산신탁(주)	두산에너빌리티(주)
주 소	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, 상가 104동 325호(우동, 해운대두산위브더제니스)	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, 7층 (대치동, 섬유센터)	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산볼보로 22 (귀곡동)
법인등록번호	180111-1364148	110111-7125720	194211-0000943

## ■ 견본주택 안내



- ※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(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.)
- ※ 본 공고와 공급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계약서가 우선합니다. ※ 마감재(목록표)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**5** 055-286-0880

https://trivn-doosan-changwon.com/

